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0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최보윤·서천호·백종헌

정성국 · 김선교 · 진종오

박수영 • 안상훈 • 신성범

박정하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망정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1항에 따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사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
- 제89조의3(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① 제89조의2제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 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 ② 시·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 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 은 경우에는 즉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사망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인,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9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제 정 안 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망정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1항에 따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사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의3(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① 제89조 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84조제1

<신 설>

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8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 도록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 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 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

<신 설>

<u>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u> <u>우</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 인,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시 • 읍·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 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